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57
----------	-------

발의연월일 : 2026. 4. 2.

발 의 자 : 이춘석 · 정준호 · 문진석
박해철 · 박민규 · 서미화
이정문 · 이연희 · 윤준병
한민수 · 박 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및 사람과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사자(死者)를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사자를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영상 및 콘텐츠가 제작·유포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2월 3·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모독하는 AI 영상이 유포되어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이러한 역사적 위인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자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고 사람에게 대한 모욕죄와 동등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악성게시물 등을 통해 사자를 모욕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1조(모욕) 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사자(死者)를 모욕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第311條(侮辱) 公然히 사람을 侮辱한 者는 1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 또는 200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u></p>	<p><u>제311조(모욕) 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u>② 공연히 사자(死者)를 모욕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u></p>